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2. 9. 1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8.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8.28.**
-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2.9.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창 기 황 일자리진흥과장

가. 제안이유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대상 분류를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명시(안 제1조)**
- 2) 중복적인 사업 분류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분류(안 제3조)**
- 3) 지역 내 다양한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는 개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 신설(안 제3조제5호)

- 4)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정(안 제8조제5항)
- 5)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연 4회로 명시(안 제8조제6항)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고용복지통합 자립 지원서비스와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 지역주민으로 하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0 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은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을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제22조의 2”는 “제21조”로, 종전의 “제23조”는 “제21조의 2”로 각각 조문 이동됨에 따라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안 제8조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은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2012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조례 제8조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